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901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조인철・황정아・최민희

김 현 • 박민규 • 정동영

이훈기 • 노종면 • 장종태

김우영 · 이정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11명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제46조의2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人"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理事는"을 "이사는 제4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 및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명
- 3.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3개 이상의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단. 추천된 2인 중 1인은 지역방송 분야의 전문가여야 한다.
-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

- 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1명
-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
-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 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 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제4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장의 임면(任免)제청

7의2.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사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 하다.

제3조(이사 및 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2

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임명된 이사와 사장의 임기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추천"을 "임명제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
| 등) ① (생 략) |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 ② |
| 이사 <u>11人</u> 으로 구성한다. | <u>13명</u> |
|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 ③ <u>이사는 제46조의2 각 호의</u> |
|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 중에서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 |
| | 역 및 사회 |
| | <u>다음 각 호에 따라</u> |
| |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
| | 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
| | <u>임명한다</u> . |
| <u><신 설></u> |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 |
| | 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
| | 추천하는 사람 4명 |
| <u><신 설></u>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
| |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 |
| | <u>하는 사람 4명</u> |
| <u><신 설></u> | 3.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
| | 활동내용, 회원 수를 기준으 |
| | 로 선정한 방송ㆍ미디어 관련 |
| |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 |
| | 람 2명. 단, 추천된 2인 중 1 |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단서</td>신설>

⑧ · ⑨ (생 략)

<신 설>

인은 지역방송 분야의 전문가 여야 한다.

- 4.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가.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1명 나. 한국피디연합회 추천 1명 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추천 1명 천 1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 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8 -----
- -----. <u>다만, 제</u> 49조제1항제7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u>⑨</u>· <u>⑩</u>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제4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

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 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방송학 · 언론학 · 전자공학 · 통신공학 · 법률학 · 경제학 · 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 • 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 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방송 · 언론 관련 단체나 기 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 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 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 이 되는 사람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 6. (생략)

<신 설>

② (생략)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하다.

- 1. ~ 6. (생략)
- 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신 설>

8. ~ 15. (생략)

② (생 략)

----.

- 1. ~ 6. (현행과 같음)
- 7.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 1. ~ 6. (현행과 같음)
- 7. 사장의 임면(任免)제청

7의2. 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 장의 임명동의

- 8. ~ 1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